

의안번호 2709

2021년도 서울특별시 중소기업육성기금 융자계정 운용계획 변경안

검 토 보 고 서

I. 제안경위

- 의안번호 제2709호, **2021년도 서울특별시 중소기업육성기금 융자계정 운용계획 변경안**은 2021년 8월 11일 서울특별시장으로부터 제출되어 소관 상임위원회인 기획경제위원회의 예비심사를 거쳐 우리 위원회로 회부된 것임

II. 기금운용계획 변경안 관련 검토

1. 제안이유

- 가. 지방자치단체 기금관리법 제 11조 규정에 의거 2021년도 서울시 중소기업육성기금 융자계정 운용계획 변경(안)에 대하여 서울특별시의회의 의결을 받고자 함

2. 주요내용

- 가. 2020년도 결산결과 조정된 예치금과 2021년도말 지출 예정액 등을 반영하여 중소기업육성기금 운용계획 변경
- 나. 코로나19 확산 대응 정책자금 지원 확대에 필요한 시중협력자금 이차보전금 마련을 위해 일반회계 전입금 및 재정투융자기금 예수금 편성

○ 2021년 기금운용계획 변경내역

(단위 : 백만원)

정책 / 세부사업		당초(A)	변경(B)	증감 (B-A)
합	계	298,894	383,900	85,006
중소기업 금융지원		257,070	268,597	11,527
	중소기업직접융자	200,000	200,000	-
	시중은행협력자금지원 이차보전금	55,300	66,800	11,500
	통합관리시스템유지보수	163	190	27
	서울형마이크로크레딧지원	607	607	-
	기금업무대행수수료	1,000	1,000	-
재무활동		41,819	115,298	73,479
	통합재정안정화기금(통합계정) 원리금 예수금 상환	2,618	2,618	-
	여유자금 예치	39,201	112,680	73,479
행정운영경비		5	5	-
	기금관리비	5	5	-

○ 수입·지출계획 변경내용

(단위 : 백만원)

수입 계획					지출 계획				
항 목	당 초 (A)	변 경 (B)	증 감(B-A)		항 목	당 초 (A)	변 경 (B)	증 감(B-A)	
합 계	298,894	383,900	85,006		합 계	298,894	383,900	85,006	
융자금회수 (이자포함)	200,923	200,923	-		사 업 비	융자금	200,000	200,000	-
공공예금 이자수입	3,000	3,000	-			시중은행 협력자금지원 이차보전금	55,300	66,800	11,500
예치금 회	75,971	152,577	76,605			시스템유지보수	163	190	27
일반회계 전입금	19,000	25,400	6,400			서울형 마이크로크레딧 기금업무대행수 수수료	607	607	-
						통합재정안정화 기금(통합계정) 원리금 예수금 상환	2,618	2,618	-
						예치금	39,201	112,680	73,479
					행정운영경비	5	5	-	

Ⅲ. 검토의견

- 동 기금운용계획 변경안은 2020회계연도 결산결과 발생한 여유자금 766억 500만원과 지난 7월, 제1회 추경예산에 편성된 기금전출금 64억원을 수입계획중 예치금회수(766억 500만원)와 일반회계 전입금(64억원)에 반영하고, 수입계획과 연동된 지출계획중 여유자금 예치(734억 7,900만원)와 시중은행협력자금 지원(115억원), 통합관리시스템 유지보수(2,700만원)에 지출계획하고자 기금운용계획 변경안을 제출한 것임

- 「지방자치단체 기금관리기본법」 1)은 정책사업 지출금액의 10분의 2를 초과하여 기금운용계획을 변경하려는 경우에는 미리 지방의회의 의결을 받도록 정하고 있음
 - 아울러 「2021년도 지방자치단체 기금운용계획 수립기준」 2)에는 전년도 기금결산에 따라 수입계획중 예치금회수 금액이 변동되어 지출계획중 예치금 항목만을 조정하려는 경우에도 재무활동의 20%를 초과하는 변경에 해당되면 지방의회의 의결이 필요한 것으로 명시하고 있는 바,

 - 동 계정의 운용계획 변경안은 지출계획중 정책사업인 ①**중소기업 금융지원**이 당초보다 4.4%, 115억 2,700만원 증가하여 관련 법령에 따라 의회의결사안에 해당되지 않으나, ②**재무활동**의 경우, 당초보다 175.7%, 734억 7,900만원 증액되어 동 계정의 운용계획 변경안은 의회 의결이 필요한 사항으로 판단됨

1) 「지방자치단체 기금관리기본법」 제11조(기금운용계획의 변경)

②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기금운용계획의 정책사업 지출금액을 변경하려는 경우에는 미리 지방의회의의결을 받아야 한다. 다만, 정책사업 지출금액의 10분의 2 이하를 변경하려는 경우와 다음 각 호의 기금의 정책사업 지출금액을 변경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이하 생략)

2) 행정안전부, 「2021년도 지방자치단체 예산편성 운영기준 및 기금운용계획 수립기준」('20. 7), p.43, p.302

〈표 3-1〉 중소기업육성기금 융자계정 운용계획 변경안

(단위 : 백만원, %)

정책 사업 / 단위 사업 / 세부 사업	당 초 (A)	기금 운용 계획변경안 (B)	증 감 (C=B-A)	증 감 륜 (D=C/A)
계	298,894	383,900	85,006	-
중 소 기 업 금 용 지 원	257,070	268,597	11,527	4.4
재무활동(노동민생정책관 소상공인정책담당관)	41,819	115,298	73,478	175.7
내 부 거 래 지 출	2,618	2,618	-	-
재정투융자기금 원리금 예수금 상환	2,618	2,618	-	-
보 전 지 출	39,201	112,680	73,478	187.4
여 유 자 금 예 치	39,201	112,680	73,478	187.4
행정운영경비(중소기업육성기금)	5,000	5,000	-	-

※ 백만원 단위 미만은 절사한 것임

자료근거 : 서울특별시, 소상공인정책담당관-1709 ('21. 8. 25) 재구성